

◇ 자 료

書雲觀志 譯註 解説

5. 番規¹⁾

俞 景 老

1. 飜譯과 註

「文獻備考」²⁾에 말하기를 “欽敬閣³⁾이 世宗 戊午年(世宗 20年, 1438) 正月 丙戌朔에 이루어졌고 報漏閣⁴⁾은 이에 앞서 甲寅年(16年, 1434)에 告成⁵⁾되었다. 그래서 甲寅年 七月 丙子朔부터 새 漏刻⁶⁾이 비로소 使用된 것이다. 書雲觀生⁷⁾을 시켜서 번갈아 入直⁸⁾해서 이를 監視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실은 一年 전인 癸丑年(15년 1433)에 欽天監⁹⁾의 挈壺正¹⁰⁾이 禁漏¹¹⁾를兼하여 管掌하는 例에 따라 다시 禁漏를 天文¹²⁾에 合屬시켰던 것이다. 또 「與地勝覽」¹³⁾에記載된 觀象監¹⁴⁾ 하나가 北部¹⁵⁾ 廣化坊¹⁶⁾에 있다는 것으로 相考하여 보면 書雲觀을 觀象監으로

1) 番規: 觀象監의 入直勤務 規程.

2) 文獻備考: 英祖 때에 中國 馬端臨의 文獻通考를 본받아 洪鳳漢의 責任下에 編纂된 일종의 百科事典.

3) 欽敬閣: 世宗 때에 天象의 運行과 四時의 變化를 水激式으로 自動的으로 運轉시켜서 보여주는 裝置를 設置했던 殿閣의 이름.

4) 報漏閣: 漏刻에 의한 水激式 裝置로 傳達해서 各各의 人形이 鉦, 鍾, 鼓 등으로 時刻을 알리게 만들었던 自擊漏를 設置했던 殿閣의 이름.

5) 告成: 工事의 完成을 알린다는 말.

6) 漏刻: 옛날 물시계.

7) 書雲觀生: 書雲觀에서 勤務하는 사람.

8) 入直: 交代로 들어가서 勤務하는 사람.

9) 欽天監: 우리나라 書雲觀 또는 觀象監과 같이 天文 曆數를 管掌했던 官署를 中國의 明 清代에는 欽天監이라고 불렀다.

10) 挈壺正: 中國에서 漏刻과 報時를 管掌했던 司天監 또는 欽天監의 官吏의 名稱.

11) 禁漏: 宮中の 漏刻.

12) 天文: 觀象監의 天文學이란 部署.

13) 輿地勝覽: 朝鮮 成宗12年(1481)에 盧守愼의 責任下에 編纂되었던 地理志인 東國輿地勝覽과 그 後에 中宗25年(1530)에 增補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을 가리키는 것이다.

14) 觀象監: 朝鮮初에 高麗의 制度를 계승하여 書雲觀이라고 했던 것은 世祖12年(1466)에 觀象監으로 改稱했다.

15) 北部: 朝鮮初 서울 卽 漢城을 東西南北中の 五部로 나누고 部 밑에 坊을 두었다. 國초에는 모두 49坊이었다. 北部는 그 5部중의 하나.

16) 廣化坊: 昌德宮과 그 西側 一帶의 坊名.

바꾸고 禁漏를 때 맞추어 이곳에 나누어 設置한 것인데 그 시작이 어느 해였는지는 詳細히 알 수가 없다. 觀象監에 入直해서 勤務하는 要領은 오로지 細心하고 精思하는 데 달려 있으며 天象¹⁷⁾을 觀測함은 그 重要함과 慎重해야 함이 다른 官衙와는 비길바가 아니다. 仁祖 丙寅年(仁祖 4年, 1626)에는 本監¹⁸⁾이 天象觀測의 가장 重要的 곳이라하여 各司²¹⁾가 같이 모여서 事務를 볼수 없다고 하는 것을 王命을 받들어서 廳事¹⁹⁾에 揭示하고 雜人의 出入을 一切 禁止하였다.

天文學²⁰⁾에서는 3名, 命課學²¹⁾에서는 1名이 晝夜 계속해서 入直한다. 天文學은 같은 時間 棼으로 夜間을 나누어서 觀星臺에 올라가서 觀測을 하고 命課學은 專門으로 選吉²²⁾을 掌管한다. 그리고 地理學²³⁾의 1名은 卯時에 出勤해서 酉時에 退勤하는데 3日이 되면 모두 交替한다.

(註)²⁴⁾ : 天文學의 3名은 上, 中, 下로 分番하는데 本廳의 公事員²⁵⁾이 돌러가며 勤務하는 順次(循次²⁶⁾)를 마련(磨鍊²⁷⁾)하여 上番은 正²⁸⁾과 僉正²⁹⁾이, 中番은 參上³⁰⁾이, 下番은 參外³¹⁾가 맡게 한다. 卯時에 就直³²⁾하여 面對하여 業務를 引繼引受하고 交代한다. 正宗 甲寅年(正祖 18年, 1794)에 本監³³⁾에서 奏請하여 3명중의 1名은 三曆官³⁴⁾과 修述官³⁵⁾과 祿官³⁶⁾ 中の 1人을 돌러가며(輪回³⁷⁾) 入直케 했다. 地理學에서는 實官³⁸⁾과 前銜³⁹⁾을 같이 섞어서(通融⁴⁰⁾) 輪直⁴¹⁾케 하고 命課學에서는 諫吉官⁴²⁾과 修選官을 輪回 入直케 한다.

여기서는 옛 徽文高校 現在의 現代建設 자리가 觀象監이 있던 자리이다.

17) 天象 : 日, 月, 五星 等の 天體의 運行 彗星, 流星, 客星 等の 變化, 그리고 主로 광학적 氣象現象을 말한다.

18) 本監 : 北部 廣化坊에 있었던 觀象監을 말하는 것.

19) 廳事 : 觀象監의 本部 建物.

20) 天文學 : 觀象監 내의 天文學 關係의 實務를 담당하는 部署.

21) 命課學 : 觀象監 내의 吉凶을 判斷하고 選擇의 業務를 담당하는 部署.

22) 選吉 : 吉日이나 吉時 등을 選擇하는 일.

23) 地理學 : 觀象監 내에서 風水 其他의 地理學의 業務를 擔當하는 部署.

24) (註) 原文에 실려 있는 작은 글자로 된 註를 이 譯註에서는 (註)로 표시했다.

25) 公事員 : 觀象監 本廳에서 일하는 官員.

26) 循次 : 돌러가며 入直 勤務하는 順番.

27) 磨鍊 : 마련한다는 순 우리말을 漢字로 表記한 것.

28) 正 : 觀象監正의 약칭(略稱).

29) 僉正 : 觀象監僉正의 略, 말하자면 副正에 해당하는 職이다.

30) 參上 : 正三官의 堂下官에서 六品까지의 官員에 대한 呼稱.

31) 參外 : 參下라고도 한다. 七品 이하의 官員에 대한 호칭.

32) 就直 : 入直 勤務한다는 뜻.

33) 面看 : 任務를 交代할 때의 面對의 뜻.

34) 三曆官 : 官職편을 參照할 것.

35) 修述官 : 官職편을 參照할 것.

36) 祿官 : 祿을 받는 官員.

37) 輪回 : 돌러가며 順次的으로 勤務하는 것.

38) 實官 : 官職편을 參照할 것.

39) 前銜 : 官職편을 參照할 것.

40) 通融 : 다른 職位의 사람들을 같이 섞어서 配置한다는 뜻.

天文學의 上, 中, 下 三番이 晝夜 分掌하는 法은 첫날(初日)⁴³⁾에는 日出에서 午前까지는 下番이, 午後에서 初昏⁴⁴⁾까지는 中番이, 一更⁴⁵⁾과 二更은 下番이, 三更과 四更은 上番이, 五更에서 昧爽⁴⁶⁾까지는 中番이 監視(監之)⁴⁷⁾한다. 가운데 날(中日)⁴³⁾에는 日出에서 午前까지는 上番이, 午後에서 初昏까지는 下番이, 一更과 二更은 中番이 三更은 上番이, 四更에서 昧爽까지는 下番이 監視한다. 끝날(終日)⁴³⁾에는 日出에서 午前까지는 下番이 午後에서 初昏까지는 中番이 一更은 下番이 二更과 三更은 上番이 四更에서 昧爽까지는 中番이 監視한다.

昧爽 後에서 日入前까지 觀測한 것은 그날 안으로(限日)⁴⁸⁾ 整理하여 王께 報告하고 初昏에서 昧爽前까지 觀測한 것은 宮門이 열리기를 기다려서 報告한다.

(註) : 東이 뜬(開東)⁴⁹⁾ 후 日出 前까지를 昧爽이라고 하며, 日入 後에서 烽火⁵⁰⁾ 전까지를 初昏이라고 한다. 罷漏⁵¹⁾ 후부터 東이 뜨기 前까지가 五更에 屬한다. 各夕의 該當 直員은 天象의 變化에 따라 一一이 記錄한다. 매양 單子⁵²⁾를 작성해서 入啓할 때는 下番이 承政院⁵³⁾과 侍講院⁵⁴⁾에 報告書를 提出한다. 또 小單子를 4件을 만들어서 2件은 承政院과 臺后⁵⁵⁾에 提出하고 1件은 侍講院에 提出하고 1件은 分撥⁵⁶⁾을 아울러서 內閣⁵⁷⁾에 提出한다. 이날 날이 밝자 自擊匠⁵⁸⁾을 시켜서 分撥을 세 相公⁵⁹⁾과 두 提調⁶⁰⁾와 首堂⁶¹⁾과 久任⁶²⁾에게 갖다바친다.

白虹貫日 : (註) 먼저 暈⁶³⁾과 珥가 생기고 그 밖으로 虹氣가 굵으스름하게 이것을 꿰어 뚫는

41) 輪番 : 輪番制로 入直하는 것.

42) 諛吉官 : 官職편을 볼 것.

43) 初日 : 三日間의 勤務의 第 1, 2, 3日을 初日, 中日, 終日로 불렀다.

44) 初昏 : 日入에서 밤 一更까지.

45) 一更 : 日入後의 初昏과 日前의 昧爽을 제한 어두운 夜間을 一更에서 五更까지의 5區間으로 나누었다. 季節에 따라 晝夜의 時間이 바뀌므로 各更의 길이도 自然 季節에 따라 다르게 된다.

46) 昧爽 : 五更에서 日出까지의 소위 동이 뜬다는 때를 말한다.

47) 監之 : 감시하고 관측한다는 뜻이다.

48) 限日 : 그날 안으로 라는 뜻.

49) 開東 : 東이 뜬다는 우리말의 漢文 表現인 듯 하다. 해뜨기 전의 시각을 말하는 것이다.

50) 烽火 : 烽火臺에서 불 또는 煙氣를 올리는 것인데 初昏이 끝날 때 烽火를 올렸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51) 罷漏 : 本來는 漏刻 즉 물시계로 夜間의 時刻(更刻分)을 測定하는 作業을 五更末에 마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도 있는데 明宗10년에 만든 經國大典註解 行巡條에는 人定을 初更3點에 人行을 禁止하는 것. 罷漏를 5更3點에 人行을 解放하는 것으로 記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本文의 註에 위와 같이 말한 것은 5更3點에서 開東까지가 5更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52) 單子 : 간단한 書類 여기서는 報告書.

53) 承政院 : 王의 秘書室에 해당하는 官署로 6人의 承旨가 勤務했다.

54) 侍講院 : 王子에게 學問을 講論하는 곳.

55) 臺后 : 承政院의 注書가 居處하는 곳.

56) 分撥 : 朝報(承政院에서 처리하는 事項을 매일 아침에 기록하여 배포하는 官報)의 重要事項을 발행하기 전에 먼저 베껴서 돌리는 것.

57) 內閣 : 奎章閣.

58) 自擊匠 : 漏刻의 일을 맡은 사람.

59) 相公 : 議政 즉 政丞.

60) 提調 : 觀象監의 提調. 官職편을 參照할 것.

61) 首堂 : 그 職場의 우두머리. 여기서는 觀象監正.

62) 久任 : 觀象監의 特殊上位職에 오래 留任되어 勤務하는 官員.

다. ○報告에는 某日 某時⁶⁴⁾에 日暈과 兩珥가 나타났고 白虹⁶⁵⁾이 貫日⁶⁶⁾했다고 한다. 또 冠, 背, 抱, 珥, 戟, 履, 重量, 交暈, 等の 變이 있으면 무슨 變이라고 쓰고 보이는 대로 그 形態를 그린다.

白虹貫月: (註) 暈이 생기고 複雜한 變이 貫日과 같다. ○밤 某更⁶⁷⁾에 白虹이 貫月⁶⁸⁾했다고 쓴다.

地動 地震⁶⁹⁾: (註) 빠른 것은 地動, 느린 것은 地震이라고 한다. ○某日 某時 또는 夜 某更에 地動 地震이 있었으면 地震이 某方으로부터 일어나서 某方에서 그쳤다고 쓴다.

客星: (註) 形體가 恒星과는 다르다. ○夜 某更에 客星이 某宿度⁷⁰⁾ 內에 나타났다고 쓴다.

彗星: (註) 꼬리가 한쪽을 가리키는 것을 彗星이라고 한다. 彗星의 光芒⁷¹⁾은 海의 反對쪽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저녁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그 꼬리가 東쪽을 가리키고, 새벽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西쪽을 가리킨다. ○夜 某更에 客星이 某宿度 內에 나타났는데 彗星과 같다고 하고 만약 某宿에서 移動하여 보이고 꼬리의 흔적이 있으면 곧 彗星이 某宿度 內에 移動하는 것이 보였고 色은 어둡고 꼬리의 길이는 몇尺이며 某星보다 크다고 쓴다.

孛星: (註) 光芒이 四方으로 나온 것을 孛星이라고 한다. ○夜 某更에 某宿度 內에 나타났다고 쓴다.

蚩尤旗: (註) 彗星과 같은데 꼬리 뒤쪽이 구부러져서 깃발의 모양과 같은 것이다. ○彗星과 같은 식으로 報告한다.

營頭星: (註) 별이 낮에 떨어지는 것이다. ○報告하는 法은 아래의 流星의 項에서 詳細히 說明했다.

이상의 屬은 곧 그 時刻에 報告한다. (註) 上番은 곧 承政院과 侍講院으로 가서 말로 傳하여 王께 上啓토록 하고 夜間이면 곧 小單子를 꾸며서 문틈으로 넣어서 上啓하게 한다. 中番과 下番은 나누어서 세 相公과 두 提調에 告하고 書員⁷²⁾을 시켜서 久任官에 告한다.

日月食: (註) 食이 일어나기 5個月 前에 述者⁷³⁾가 調査한 것을 上啓하고 禮部에서 公文(咨⁷⁴⁾)을 돌려 알린다. ○某時에 日食한다. 夜 某更에 月食하다 라고 쓰고 아울러 보인대로 形象을 그리고 그림의 四方에 東西南北을 써 넣고 南字 아래에 某食의 圖形이라고 표시한다.

日月色赤: (註) 日月이 出入할 때 色이 붉은 것 ○日出時에 日色이 붉다. 月出時에 月色이

63) 暈: 햇무리, 달무리의 무리.

64) 珥: 해 옆에 귀거리처럼 나타나는 일종의 光學現象의인 무늬. 뒤에 說明이 나온다.

65) 白虹: 흰색의 무지개의 一種. 海의 둘레에 생기는 것.

66) 貫日, 貫月: 둥그런 무지개의 一部가 해나 달의 幅을 뚫고 지나가는 現象.

67) 某更: 某時は 午時 未時와 같은 것이고 某更은 一更, 二更과 같은 것으로 어떤 시, 어떤 경이란 뜻.

68) 地動, 地震: 現在는 모두 地震이라고 하는데 當時에는 急連한 것은 地動, 緩慢한 것은 地震이라고 했다.

69) 客星: 오늘날의 新星(nova) 超新星(supernova)을 客星이라고 하는데 客星의 본래의 뜻은 좀 더 범위가 넓었다. 본문의 설명에도 나타나 있다.

70) 宿度: 宿(수)는 별자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度(도)는 그 별자리에서의 位置를 뜻하는 것이다.

71) 光芒: 彗星에서 뻗어 나가는 꼬리의 類를 가리키는 말. 또는 별빛이 四方으로 뻗는 것 같이 보이는 것.

72) 書員: 글씨 잘 쓰는 사람으로 여러가지 문서의 글씨를 쓰는 사람.

73) 述者: 日月述者로서 日月食을 미리 推步(計算)하는 官員.

74) 咨: 公文 또는 公文을 보낸다는 뜻.

붉다 라고 쓰며 日入 月入時도 마찬가지이다.

日月量：(註) 氣⁷⁵⁾가 무지개와 같이 日月을 둘러 싸고 있고 그 안쪽은 붉고 바깥쪽은 푸른 것. ○某時에 日量, 某更에 月量이라고 하며, 만약 五星이 量 안에 들었으면 日月量이 某星을 둘러싸다고 하고 量 밖에 또 量이 있으면 重量이라고 하고 두個의 量이 서로 交叉했으면 交量이라고 한다. 혹시 三重 四重일 때는 보이는 대로 上啓한다.

珥：(註) 日, 月의 가에 氣가 귀거리(珥)와 같이 뭉쳐진 것이다. ○해의 東쪽에 있으면 某時에 해에 左珥가 있다 하고 해의 西쪽에 있으면 某時에 해에 右珥가 있다고 한다. 兩쪽 가에 있을 때는 某時에 해에 兩珥가 있다고 한다. 달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日月量에 珥가 있을 때는 某時에 日量에 어떠한 珥가 있다. 某更에 月量에 어떠한 珥가 있다고 쓴다.

冠⁷⁶⁾：(註) 日月 위에 氣가 一字의 모양을 이루고 있고 양끝이 아래로 굽은 것이다. ○某時에 해 위에 冠이 있다. 某更에 달 위에 冠이 있다고 한다. 만약 量이 있을 때는 日量上에 冠이 있다고 한다. 日月이 마찬가지이다.

背：(註) 日月 위에 氣가 一字 모양과 같고 양끝이 위로 구부러진 것이다. ○某時에 해 위에 背가 있다. 某更에 달 위에 背가 있다고 한다.

抱：(註) 日月의 옆에 氣가 半量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某時에 해 옆에 抱가 있다. 某更에 달 옆에 抱가 있다고 한다.

孺：(註) 日月 옆에 氣가 珥와 닮았는데 구멍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某時에 해 옆에 孺이 있다. 某更에 달 옆에 孺이 있다고 쓴다.

戟⁷⁷⁾：(註) 日月 아래에 세로 세운 창(戟)과 같은 氣가 있는 것이다. ○某時에 해 아래에 戟이 있다. 某更에 달 아래에 戟이 있다고 하고 左右의 戟일 때는 左右에 戟이 있다고 한다.

履：(註) 日月 아래에 一字와 같은 모양의 氣가 있는 것이다. ○某時에 해아래에 履가 있다. 某更에 달 아래에 履가 있다고 한다.

日中の 黑子⁷⁸⁾：(註) 해 가운데 어둡고 검은 氣가 있는 것을 말한다. ○某時에 해 가운데에 黑子が 있다고 한다.

月 42: 五星의 犯食入：(註) 1寸 이내로 光芒이 서로 닿는 것을 犯이라고 하며, 별(五星)이 달 속으로 들어가서 그 形體가 보이는 것을 星入月, 形體가 보이지 않는 것을 月食星이라고 한다. ○某更에 달이 某星을 犯했다고 하고, 달이 별을 가렸을 때는 某更에 달이 某星을 먹었다고 하며, 별이 달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某更에 某星이 달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五星이 서로 犯했을 때는 某星이서로 犯했다고 하며, 별이 某垣에 들었으면 某更에 某星이 某垣으로 들었다고 한다.

太白晝見(현)：(註) 金星이 太陽에서 40餘도가 떨어지면 낮에 觀測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새벽에 나타날때는 巳時에 未地⁷⁹⁾에 보이고 저녁에 나타날때는 未時에 巳地에 보인다 ○某

75) 氣：일월의 둘레에 생기는 여러가지 광학적 현상의 실례를 막연하게 氣라고 생각하고 표현했던 것이다.

76) 冠：머리에 冠을 쓴 것 같다는 뜻에서 冠이라고 한 것 같다. 背 抱, 履도 다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77) 戟：좌우로 끝이 가닥이 난 창.

78) 黑子：現代語의 黑點이다.

79) 未地：未方(방위의 이름)의 땅이라는 뜻이다.

時에 太白이 某地에 나타났다고 한다.

流星, 飛星 : (註)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을 流星, 아래서 위로 가는 것을 飛星이라고 한다.

○某更에 流星 혹은 飛星이 某星 아래에 나왔다고 한다. 만약 구름이 끼었을 때는 某方의 엷은 구름사이에서 나와서 某方의 하늘 가로 들어 갔는데 모양이 주먹 혹은 주발 혹은 항아리 혹은 독과 같고 꼬리의 길이가 몇尺 정도이며 色은 赤 혹은 白 혹은 靑 혹은 黃이며, 빛이 비칠 때는 빛이 땅을 비쳤다고 하고,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있었다고 쓴다.

雲氣 : (註) 天氣가 晴朗한데 白雲 혹은 黑雲이 너비는 1尺 가량이고 길이는 10餘丈이나 혹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某時 혹은 某更에 白雲 한줄기가 某方으로 부터 곧장 某方을 가리키고 있는데 너비는 1尺 가량 길이는 某丈 도는 竟天⁸⁰⁾ 했다가 한참만에 없어졌다고 쓴다. 만약 한 時가 지나도록 계속했다면 某時에 이르러서 없어졌다고 한다. 黑雲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火光 : (註) 저녁이나 밤에 불과 같은 氣가 혹은 올라가고 혹은 내려가는 것이다. ○某更 某方에 火光과 같은 氣가 있었다고 한다.

虹 : (註) 무지개가 들어가서 나타나 않게 되었다가 (다음해에 다시) 처음 나타나기 전까지를 헤아려서 관측한다. 入節日로부터 관측을 시작한다. 아래에서도 이에 따른다. ○某時에 무지개가 某方에 나타났다. 쌍무지개일 경우에는 쌍무지개가 某方에 나타났다고 한다.

電動 : (註) 우뢰가 처음으로 소리를 건운 후부터 우뢰소리가 다시 울리기 前까지의 기간에(관측한다) ○某時 某更에 우뢰(電動)가 있었다. 만약 소리가 미약한 우뢰라면 미미하게 우뢰가 있었다고 한다.

電光 : (註) 우뢰가 울리는 계절이 끝난 후에서 다시 번개가 시작되는 계절까지의 것을 말하는 것이다. ○某時 某更에 번개(電光)가 있었다고 한다.

雹 : (註) 某時 某更에 雨雹이 내렸는데 모양이 팔, 콩, 개암나무 열매, 새알만 했다고 한다.

霧 : (註) 연기와 같은데 연기가 아닌 것을 안개(霧氣)⁸²⁾ 라고 한다. 咫尺을 분별할 수 없으면 沈霧라고 한다. ○某時 某更에 霧氣 혹은 沈霧가 있었다고 한다. 當日에 비가 오면 報告하지 않는다.

霜 : (註) 서리의 엷은 것은 霜氣⁸³⁾, 두터운 것은 下霜⁸³⁾이라고 한다. 霜降前 立夏後의 것만을 말한다.

雪 : (註) 小雪 전과 立夏 후에 오는 눈을 말하는 것이다. ○某時 某更에 눈이 흘날렸다고 하고(灑雪) 눈이 내리면 곧 下雪이라고 쓴다.

雨 : (註) 某時 某更에 灑雨⁸⁴⁾, 下雨⁸⁴⁾ 했다고 하며 測雨器의 水深이 某寸⁸⁵⁾ 혹은 某分⁸⁶⁾이라

80) 竟天 : 길게 하늘을 가로질렀다는 뜻이다.

81) 무지개가 … : 무지개는 겨울에는 나타나지 않고 주로 여름에 나타난다. 잘 나타나는 때의 무지개는 變이랄 것이 없고 보통 나타나지 않는 계절에 나타나는 것이 變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期間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특별히 관측하고 기록하고 보고한다는 뜻이다. 雷動, 雷光, 霜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82) 霧氣 : 안개를 霧라고 쓸 것을 여기서는 霧氣라고 쓴 것이다. 짙은 안개 즉 沈霧와 구별했다.

83) 霜氣, 下霜 : 엷은 서리를 霜氣, 짙은 서리를 下霜이라고 구별했는데 下霜이라고한 것은 위에서 내려와 쌓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84) 灑雨, 下雨 : 이것도 가랑비 같은 것은 灑雨 좀더 많이 온 비는 下雨로 구별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85) 某寸, 某分 : 測雨器에 고인 물의 깊이를 잴 값인데 이는 周尺(1尺=약 20.7cm)으로 잴 것이다. 몇치,

고 記錄한다.

土雨⁸⁶⁾ : (註) 某時 某更에 四方이 어둡고 昏濛하고 티끌이 내리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의 類는 法式대로 써서 上啓한다. 그리고 또 風雲紀⁸⁷⁾의 午前, 午後와 每更의 아래에 어떠한 變이 있었다고 條目條目 列記하고 各已 姓名을 記載하여 考證에 待備한다. 만약 觀測을 못하고 奏啓하지 않은 者가 있으면, 當該官이 그 사람의 罪狀을 訊問하여 處罰한다.

每年 正月과 七月의 上旬에 六個月間의 星變⁸⁸⁾을 總整理(都修)하여 春秋館⁸⁹⁾에 報告한다.

測雨器의 水深도 역시 昧爽에서 日入에 이르기까지의 것을 日入後에 報告書를 써서 上啓한다. 初昏에서 五更까지의 것은 闕門⁹⁰⁾이 열릴 때를 기다려서 報告書를 올린다. 正宗 辛亥年(正祖 15年, 1791)에 敎書에 의하여 開東에서 午時初까지, 午正에서 人定때 까지, 人定에서 다음날의 開東 以前까지로 三次에 나누어서 報告書를 入啓하게 하였으며 「日省錄」⁹¹⁾ 「堂后日記」⁹²⁾ 朝紙⁹³⁾는 그 前日에 얻은 것을 合計하여 雲觀⁹⁴⁾으로부터 政院⁹⁵⁾과 內閣에 보내어 記錄에 올린 後에 頒布하기로 하고 이것을 恒久的인 規例로 定했다.

(註) 癸酉年(正祖 17年, 1793)에 다시 監官⁹⁶⁾에 命하여 午時에는 不啓하기로 하였다. 庚申年(正祖 24年, 1800)에 本監⁹⁷⁾의 上奏에 따라 人定時⁹⁸⁾에는 다만 政院에만 올리고 侍講院은 다음날 開門을 기다려서 報告書를 入啓하기로 했다. ○10月の 雨(雷)도 역시 本監의 上奏에 의하여 初하루(朔日)에서 그믐날(晦日)까지 바로 그때 그때에 啓告하되 나누어서 入啓하는 것은 前例와 같이 하기로 했다.

前의 省記⁹⁹⁾에는 吏曹에서 다만 天文學의 首堂 入直官 一人만이 入啓한다고 했는데 正宗 丁巳年(正祖 21年, 1797)에 敎書에 따라 闕內의 各司의 例에 의하여 天文學 入直 三名, 命課學 入直 一名으로 했다. 兵曹의 省記도 그러했다.

몇분이라는 뜻이다.

86) 上雨: 해방 후 한때는 흙이 섞인 비라고 해석한 사람이 많았으나 여기의 설명대로 흙비는 중국에서 황토가루가 날라오는 황사의 현상을 가르키는 것이다.

87) 風雲紀: 觀象監에서 올라간 星變觀測單子를 정리해서 書冊으로 編纂한 것인데 解放時인지 6.25때인지 없어서 지금은 없다.

88) 星變: 위의 여러가지 天象現象을 통틀어 星變이라고 하기도 했다.

89) 春秋館: 그때 그때의 政事를 記錄하는 일을 맡은 官衙로 그에 從事하는 官員은 모두 他司의 官員으로 兼任케 하였다. 領事는 領議政이 監事는 左右議政이 兼任하고 그 아래에 知事, 同知事 修撰官 編修官 紀注官 紀事官 등이 있었다.

90) 門: 開門의 門은 大闕의 門이거나 該當 官衙의 門이라고 생각된다.

91) 日省錄: 朝鮮 英祖 36년부터 純宗 4년까지의 王의 動靜을 記錄한 冊으로 正祖가 世孫時부터 日記를 적었고 即位후 奎章閣의 閣臣을 시켜 朝廷에서 行한 일을 記錄케 한 것이다.

92) 堂后日記: 承政院의 注書가 記錄한 日記. 堂后는 注書가 居處하는 房.

93) 朝紙: 朝報. 承政院에서 아침마다 그날그날에 생긴 일을 적어서各司에 돌리는 文書로 爛報라고도 했다.

94) 雲觀: 書雲觀. 따라서 觀象監의 略稱.

95) 政院: 承政院의 略稱.

96) 監官: 觀象監의 官員.

97) 本監: 觀象監員이 觀象監을 가르키는 말.

98) 人定時: 매일 밤 初更3點에 鍾을 28번씩 쳐서 사람의 通行을 禁止하는 時刻.

99) 省記: 꺾내 각처에 入直하는 官員의 姓명을 적어서 承政院을 거쳐 상주하는 文書.

○三學의 처음 任命된 官員(新來)¹⁰⁰⁾의 長期入直(倣度)¹⁰¹⁾은 15일이며 正例的인 入直(例直)¹⁰²⁾은 3일이다. 거듭 任命된 官員의 長期入直은 正이 6日, 僉正이 9日이고 參上은 12日, 參外는 15日이며 正例的인 入直은 모두 없다. (註)重來는 다시 補職(復屬)¹⁰³⁾된 사람이며 계속해서 그자리에 補職된 사람(仍任)¹⁰⁴⁾은 아니다.

○天文學의 兼教授, 久任者, 赴燕官, 本廳과 三曆廳의 任官, 地理學의 首官¹⁰⁵⁾, 教授, 命課學의 首官은 모두 入直에서 除外한다.

○天文直의 所進¹⁰⁶⁾에는 雜物을 排除한다고 度支定例¹⁰⁷⁾에 실려있다.

2. 解說

(1) 本文의 ①“又以輿地勝覽所載 ‘觀象監一在北部廣化坊’ 考之 改爲觀象監 分置禁漏昉於此”라고 한 記錄은 本書雲觀志 卷一, “官廳”편에 있는 ②“本監一在景福宮迎秋門內 一在北部廣化坊 有觀天堂 中過兵燹 改建於昌慶宮之金虎門外 慶熙宮之開陽門外 皆有觀天臺”라고 한 記事와 그에 이어진 ③“肅宗戊寅 領監事南九萬 躬審基址 剏設官衙 乃金虎門外本監也”이라고 한 2개의 記錄과 서로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①, ②를 연관시켜서 볼 때 北部廣化坊에 있었던 觀象監의 하나가 兵亂에 灰燼되어서 새로이 昌慶宮 金虎門 밖과 慶熙宮 開陽門 밖의 두곳에다 다시 지었다는 뜻이 된다. 이제 昌慶宮 안에 現在하는 觀天臺를 위의 記事 중의 觀天臺라고 한다면 昌慶宮 觀天臺 近處에 金虎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한편 現在하는 昌德宮의 西門이 唯一한 金虎門이라면 위의 記事의 昌慶宮이 昌德宮의 誤記가 되는 것이고 昌慶宮의 現在 觀天臺는 別途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한편 ①, ③을 連關시켜 생각할 때는 韓末까지 存續했던 昌德宮 金虎門 밖의 現在의 現代建設 構內的 監象監址와 그곳에 現在하는 觀天臺와 그 南쪽에 있었던 觀象監재(峴) 즉 雲峴과, 다시 그 南쪽에있는 雲峴宮이 있음을 상고하면 南九萬은 壬辰亂 以前에 있었던 宮밖의 觀象監의 예터자리(基址)를 살피고 그 자리에 觀象監을 再建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解釋이 여러 面에서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것이 옳다면 現在의 昌慶宮의 觀天臺는 別도로 資料를 찾아서 研究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②의 記事는 廣化坊 觀天臺와 昌慶宮 觀天臺를 一時 混同해서 記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研究가 있기 바란다.

慶熙宮의 開陽門은 南面의 正門이었고 그 밖의 觀象臺가 없어진지 오래고 그 자리도 찾을 길이 없게 되었으나 都城圖나 城市全圖에는 이것이 記載되어 있다. 그 位置는 開陽門의 西쪽으

100) 新來: 새로이 그 일을 擔當하도록 任命된 사람.

101) 倣度: 새로 또는 다른 일에서 두번째 세번째로 거듭 그 일을 맡게 된 사람이 連續해서 入直勤務하는 것.

102) 例直: 正例的으로 入直하는 것.

103) 復屬: 다시 그 任務의 官員에 所屬되는 것.

104) 仍任: 그대로 그자리에서 勤務하게 된 사람.

105) 首官: 首堂. 한 官衙의 우두머리(首席)

106) 所進: 가지고 들어가는 물품을 말하는 듯하다.

107) 度支定例: 英祖 25년(1749)에 各官衙의 經費를 절약하기 위하여 만든 國家 經費 支出에 관한 例規.

로 옛 城廓에 가까운 쪽으로 되어있다.

(2) 觀測의 報告規程으로 보면 그 對象은 크게 ①天體에 관한 現象 ②氣象에 관한 現象, 그리고 ③地震現象으로 分類된다. 그러나 관심의 對象의 상당 部分은 역시 占星學의인 傳統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 그래서인지 觀天臺는 本名이 小簡儀臺인데 觀測報告에는 小簡儀臺에 의한 天體의 位置 觀測에 대한 言及이 없다. 簡儀는 天體의 位置를 赤經과 赤緯 또는 去極度로 測定하는 裝置임을 생각할 때 많은 疑問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앞으로 더 徹底한 記錄의 調査를 推進해야 할 것이다.

(4) 本 番規에서 보면 觀測의 結果가 記錄되는 것으로는 「星變測候單子」, 「朝報」, 「風雲紀」, 「承政院 日記」, 「日省錄」, 「堂后日記」, 「奎章閣日記」 春秋館에서 編纂되는 歷史書등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和田雄吉이 主編한 朝鮮總督府觀測所 大正六年七月刊行인 「朝鮮古代觀測記錄報告」 속의 「8. 朝鮮象緯考」에는 朝鮮朝의 資料로서 「國朝寶鑑」, 「本朝實錄」, 「承政院日記」, 「奎章閣日記」, 「秘書監日記」, 「祈雨祭謄錄」, 「風雲紀」, 「天變錄」, 「星變測候單子」, 「星變錄」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朝報」, 「堂后日記」, 「風雲紀」, 「天變錄」, 「星變錄」은 完全히 없어졌고 星變測候單子 중의 極小部가 6.25後에 古物商에 돌다가 延世大學校 國書館에 의해서 購入 收藏되었다. 이에는 孫寶基教授의 功이 컸다.

(5) 本文 月五星犯食入 註에 「星入月中 體見曰 星入月」이란 말이 있다. 五星 즉 5개의 行星에 관한 한 이러한 現象은 있을 수 없다. 옛 冊에 간혹 이러한 記述이 있는 수가 있다.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以上 書雲觀志 卷壹 끝)

後記

以上으로 5회에 걸쳐서 書雲觀志 全四卷 중의 第一卷의 註釋, 翻譯, 簡單한 解説을 일단은 마무리하게 된 셈이다. 書雲觀志의 總目을 여기에 移記하면 아래와 같다.

卷之一, 官職, 官廳, 薦擧, 科試, 取材, 勸課, 褒貶, 坐衙, 番規.

卷之二, 治曆, 測候, 交食, 堪輿, 選擇, 屬官, 吏隸, 進獻, 頒賜, 式例, 貢物.

卷之三, 故事.

卷之四, 書器.

書雲觀의 職員組織, 廳舍, 職員採用制度, 職員의 勤務評價, 勤務規則등에 대한 것은 이一卷에서 說明된 것이다.

위의 全四卷중에서 第一, 第二卷이 어렵고 특히 第一卷은 朝鮮時代의 官制와 法典用語에

門外漢인 나에게는 가장 理解하기 어려운 部分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一旦은 작업이 끝났다고는 하나 그間에는 수많은 誤解가 섞였을 줄 안다. 이러한 나에게는 힘겨운 作業을 進行시키는데 있어서 다음의 冊들이 작으나 크나 매우 緊要한 參考가 되었으므로 暫時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

辭典으로는 우리나라 民衆書林刊行의 「新字海」와 「漢韓大字典」을 利用하였다. 모두 前高麗大教授 李相殷의 鑑修로서 우리나라 漢字典중에는 가장 믿을만 하였다. 日本것으로는 大修館書店刊行 諸橋轍次著 「漢和大辭典」 全十三卷을, 中國刊行의 康熙字典도 간간이 보았다. 台灣것으로는 中國文化大學印行의 「中文大辭典」 全十卷을 썼다. 위의 巨大한 두種의 辭典은 서로 한쪽에 있으나 다른편에는 없는 單語가 있고 그 敘述도 각각 長短點이 있다. 다만 中文大辭典에는 끝 部分에 가까운 쪽에 連續해서 있어야 할 몇字와 그에 屬한 單語가 무더기로 빠져있다. 編輯 또는 印刷中에 그들의 字에 屬하는 카드가 紛失되었던 것이 아닌가 疑心이 간다.

朝鮮時代의 法典으로는 保景文化社 影印의 國史研究室校訂 「校訂經國大典」과 朝鮮總督府 中樞院印行의 「校註大典會通」을 마련하였다. 後者は 各時代에 改正·補充된 것까지 한 곳으로 包含시켰고 윗쪽 欄外에 若干의 註解가 添加되어 있다. 朝鮮時代 法典用語의 解說書로는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影印의 日本東洋文庫本 「經國大典註解」 前後編 一卷과 韓國精神文化研究院刊行 「譯註 經國大典」 全二卷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한국고전용어사전 1」 (이하 未刊) 一卷과 法制處刊의 「古法典用語集」 一卷을 利用하였다. 이중 精神文化研究院의 「譯註 經國大典」의 제2권 註釋篇은 完璧에 가까우나 나의 作業에는 역시 語彙數가 不足했고 世宗大王紀念事業會의 것은 첫 卷이라서 더더욱 用語數가 不足했다. 결국 가장 많이 利用한 것이 法制處의 「古法典用語集」이었다. 이것은 1979年刊으로 이미 絶版이 된 것을 그 執筆者的 一人인 民樹李奭求兄이 複寫製本하여 주었다. 여기에 深甚한 謝意를 表한다. 그 冊의 校閱者 趙國元, 執筆者的 一人인 南晩星 두 분은 지금은 幽明을 달리했으나 生前에 서로 親히 만나고 이야기했던 幸運의 記憶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이 썼던 「古法典用語集」에는 相當한 數의 誤謬가 있다는 評도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數의 用語를 다룬 것은 아직은 없고 또 그 冊이 이러한 用語解説書로서는 가장 일찍 나왔던 것으로 안다. 解放後에 엮어진 以上の 3種의 用語註釋書에 대하여 그저 感謝할 뿐이다. 이들이 없이는 나의 作業은 그나마도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 더 附言해야 할 것은 書雲觀志 속의 難解한 語句가 위의 여러 解説書로서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이 가끔씩 있었고 이런 것들은 不得不 나 자신이 엉뚱한 解釋이나마 붙여서 글을 이을 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는 事實이다. 이 때문에 이 註釋에 더 많은 誤謬가 混入되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이 書雲觀志의 註釋과 翻譯은 이렇게 粗雜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後學들은 이 나의 蕪舛한 譯註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옛 天文學史를 한層 더 깊이 理解하는 作業을 계속해주시기를 懇曲히 付託한다.

書雲觀志 第二, 三, 四의 나의 註釋과 翻譯은 이대로 계속할 豫定이다. 좀더 빠른 速度로 進行될 것이고 뒤로 갈수록 作業도 쉬워질 것을 믿고 있다.

한국과학사학회지 編輯人으로부터의 勸告에 의해서 이상과 같은 蛇足を 붙였다.

1994. 8. 31.

追記: 이 原稿의 印刷의 初校를 하던 중에 世宗大王紀念事業會 朴鍾國會長의 周旋으로 한

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을 구했다. 이 사전 속에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적지 않은 古用語들이 들어 있음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일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을 期待하고 있다(1994. 11. 19.).